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96 발의연월일: 2020. 7. 29.

발 의 자:조정식·박성준·김회재

유동수 · 송갑석 · 이용우

정일영 · 임호선 · 양경숙

양향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된이 '경제자유구역'제도는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, 연구개발특구·산업단지 등 국내 타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, 해외 특구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 거점으로써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.

따라서 코로나19, 일본 수출규제, 미·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'경제자유구역'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.

이에,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, 제도개선, 세제·입지 혜택 확대,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'경제자유구역'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첨단기술 및 첨단제품,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·재산세 등을 감면함(안 제75조의4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02호)의 의결을 전 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5조의4(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) ① 「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취득세 및 재산세 전액을,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.

- 1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인증받은 기술 및 제품에 투자하는 사업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2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의5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-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, 적용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75조의4(경제자유구역 입주기
	업에 대한 감면) ① 「경제자
	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
	특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
	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
	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
	<u>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부동</u>
	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
	7년 동안은 취득세 및 재산세
	<u>전액을, 그 다음 3년 동안은 10</u>
	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
	각각 감면한다. 다만, 지방자치
	단체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	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
	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20년까
	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
	감면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
	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
	<u> 따른다.</u>
	1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제1항
	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	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

제품을 인증받은 기술 및 제 품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- 2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의 의5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이 하고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, 적용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